



DIS

2018
독일중재원(DIS)
중재규칙

2018

독일중재원(DIS) 중재규칙

2018년 3월 1일 시행

머리말

독일중재원(Deutsche Institution für Schiedsgerichtsbarkeit e.V., "DIS")은 대체적 분쟁해결과 중재를 위한 독일의 선도적인 기관입니다. 독일중재원은 1920년대 설립된 이래 오랜 기간 기업들의 상사 분쟁 해결을 담당해왔고, 수천 건에 이르는 중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2018 DIS 중재규칙은 규모와 산업군을 망라하고 모든 기업과 중재지가 독일 국내 또는 해외인 중재절차에 동등하게 적합합니다. 이 규칙은 국내중재 및 국제중재의 발전과 개정되기 전 규칙하의 실무적 경험을 반영하고자 개정되었습니다. 이 규칙은 국내외 중재전문가들과 국내중재와 국제중재에 대한 수년간의 경험이 있는 기업인 및 학자들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규칙은 중재절차의 효율성, 윤리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조적 절차 및 제도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DIS에 중재를 회부하는 세계 각지의 당사자들은 DIS의 행정적 노하우, 수년간의 경험, 그리고 그 전문성의 혜택을 향유합니다.

DIS는 분쟁과 소송이 기업들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8 DIS 중재규칙은 조기분쟁해결 및 절차의 효율성과 신속성에 특히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새 규칙은 독일과 유럽의 대륙법계 요소에 계속적으로 중점을 두어 여타 기관의 규칙과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예로는 모든 당사자들의 동의를 조건으로 한 화해권고제도가 있습니다. DIS가 2010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분쟁관리규정 역시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간결한 형태로 정리되어 2018 DIS 중재규칙의 부칙 6 에 포함되었습니다.

DIS 중재규칙은 견고한 절차적 틀을 제공하여 당사자들이 그들의 구체적인 요구에 따라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18 DIS 중재규칙 제27조는 중재판정부가 당사자들과 사전 사건관리회의를 통해 해당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DIS는 2018 DIS 중재규칙 외에 화해, 조정, 전문가 권고, 전문가 결정 및 재정 등의 대체적 분쟁해결을 위한 전 영역의 규칙을 제공합니다. 스포츠 관련 분쟁은 DIS 스포츠 중재규칙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DIS는 이와같이 대체적 분쟁해결을 위한 총괄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18년 3월 베를린/켈른

독일중재원(DIS) 표준조항

독일중재원(DIS)은 2018 독일중재원(DIS) 중재규칙을 활용하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아래의 표준조항들을 제안합니다.

- (1)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되는 또는 그 유효성에 대한 모든 분쟁은 독일중재원(DIS) 중재규칙에 따라 일반 법원에 회부하지 않고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 (2) 중재판정부는 ["단독중재인" 또는 "3인 중재인" 중 선택 기입]으로 구성된다.
- (3) 중재지는 [도시 및 국가 기입]로 한다.
- (4) 중재언어는 [언어 기입]로 한다.
- (5) 본안에 대한 준거법은 [준거법 기입]으로 한다.

신속중재를 위한 표준조항

- (1)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되는 또는 그 유효성에 대한 모든 분쟁은 독일중재원(DIS) 중재규칙에 따라 일반 법원에 회부하지 않고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 (2) 중재판정부는 ["단독중재인" 또는 "3인 중재인" 중 선택 기입]으로 구성된다.
- (3) 중재지는 [도시 및 국가 기입]으로 한다.
- (4) 중재언어는 [언어 기입]으로 한다.
- (5) 본안에 대한 준거법은 [준거법 기입]으로 한다.
- (6) 당사자들은 중재가 신속절차로 진행되고 독일중재원(DIS) 중재규칙 부칙 4 를 적용하기로 합의한다.

2018 독일중재원(DIS) 중재규칙

총칙	8
제1조 적용범위	8
제2조 DIS의 기능	8
제3조 정의	8
제4조 서면, 기간 및 기한	9
중재신청, 답변, 반대신청 및 절차의 병합	11
제5조 중재신청, 피신청인에게로의 송달, 관리비용	11
제6조 중재개시	11
제7조 피신청인의 통지, 답변서 및 반대신청	12
제8조 중재절차의 병합	13
중재판정부	14
제9조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 그리고 고지의무	14
제10조 중재인의 수	14
제11조 단독중재인	15
제12조 3인 중재판정부	15
제13조 중재인의 선정	15
제14조 중재판정부에 의한 중재절차의 진행	16
제15조 중재인 기피	16
제16조 중재인 직무의 조기종료	17
다수계약절차, 다수당사자절차 및 추가 당사자의 인입	18
제17조 다수계약절차	18
제18조 다수당사자절차	18
제19조 추가당사자의 인입	19
제20조 다수당사자절차의 3인 중재판정부	19
중재절차	21
제21조 절차	21
제22조 중재지	21
제23조 중재언어	21
제24조 준거법	21
제25조 임시적 처분	22
제26조 화해의 권고	22
제27조 절차의 효율적 진행	22
제28조 사실관계의 확정, 중재판정부에 의한 전문가 선임	23
제29조 구술심리	24
제30조 피신청인의 해태	24
제31조 절차의 종결	24

비용	25
제32조 중재비용	25
제33조 비용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	25
제34조 중재인의 보수 및 경비	25
제35조 중재판정부의 보수와 비용을 위한 예납	26
제36조 산정근거	27
중재판정 등에 의한 중재절차의 종료	28
제37조 중국판정의 기한	28
제38조 중재판정의 효력	28
제39조 중재판정의 내용, 형식 및 송달	28
제40조 중재판정의 정정	29
제41조 화해중재판정	29
제42조 중국판정 이전 중재절차의 종료	30
기타	32
제43조 이의신청권의 상실	32
제44조 비밀유지의무	32
제45조 면책	32
부칙	33
부칙 1 사무규정	33
부칙 2 요율표	38
부칙 3 절차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	42
부칙 4 신속절차규정	43
부칙 5 기업분쟁에 대한 보충규정	44
부칙 6 분쟁관리규정	49
DIS 윤리강령	53

총칙

제1조 적용범위

1.1 이 규칙은 독일중재원(이하 "DIS" 약칭)의 중재규칙(이하 "이 규칙" 약칭)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국내중재 및 국제중재에 적용한다.

1.2 모든 중재에는 제6조에 따라 중재절차의 개시 당시에 시행 중인 중재규칙이 적용된다.

1.3 다음 부칙들은 이 규칙의 일부를 구성한다.

- 부칙 1(사무규정)
- 부칙 2(요율표)
- 부칙 3(절차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
- 부칙 4(신속절차규정)
- 부칙 5(기업분쟁에 대한 보충규정)
- 부칙 6(분쟁관리규정)

1.4 이 규칙은 당사자들이 부칙 4(신속절차규정) 또는 부칙 5(기업분쟁에 대한 보충규정)의 적용에 합의한 경우에 준용된다.

제2조 DIS의 기능

2.1 DIS는 이 규칙에 따라 중재사무를 수행하고 중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당사자들과 중재판정부를 지원한다. DIS는 직접 분쟁을 해결하지 않는다.

2.2 DIS는 분쟁관리규정(부칙 6)에 따라 분쟁관리전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분쟁관리전문인은 해당 분쟁해결에 가장 적합한 분쟁해결제도를 선택하도록 당사자들에게 조언하고 지원한다. 당사자들은 분쟁관리전문인의 선임을 중재의 개시 전 또는 중재절차 진행 중 어느 시점에도 신청할 수 있다. 분쟁관리인은 어느 당사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만 선임된다.

제3조 정의

3.1 이 규칙 상의 "신청인", "피신청인", "당사자", "추가 당사자" 및 다른 인칭대명사들은 해당 문맥에 맞게 단수 또는 복수로 이해한다.

3.2 이 규칙 상의 "서면"은 당사자들, 중재판정부와 DIS 사이에 교환되는 모든 문서 형식의 교신을 통칭하며, 이는 중재신청서, 답변서, 모든 반대신청, 모든 추가 청구, 추가 당사자에 대한 모든 신청, 중재절차 과정 중에 제출되는 모든 변론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3.3 이 규칙 상의 "주소"는 우편주소와 전자우편주소 모두를 지칭한다.

3.4 이 규칙 상의 모든 인칭대명사는 성별과 무관하다.

제4조 서면, 기간 및 기한

4.1 제4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한, 당사자들과 중재판정부가 DIS에 제출하는 모든 서면은 이메일,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DIS에 의해 승인된 그 밖의 다른 전자적 방식에 의한다.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전송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서면은 문서 방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4.2 제5조 및 제19조에 따른 중재신청서는 DIS에 문서 방식뿐만 아니라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중재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부수로 제출되어야 한다.

- (i) 문서 방식: 각 당사자에게 중재신청서 및 첨부서류 1부씩, 그리고 DIS에 중재신청서 (첨부서류 제외) 1부
 - (ii) 전자적 방식: 각 당사자 및 DIS에 중재신청서 및 첨부서류 1부씩
- DIS는 언제든지 중재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추가 부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3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이전에 반대신청 또는 추가 청구를 하는 당사자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적 방식에 더하여 각 당사자에 1부씩 제공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부수의 해당 서면 및 첨부서류를 DIS에 제출하여야 한다. DIS는 언제든지 추가 부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4 당사자들과 중재판정부 간의 서면 송부 방식은 중재판정부가 정한다.

4.5 제4조 제2항 및 제25조의 경우를 제외한 중재판정부 또는 DIS에 제출되는 당사자의 모든 서면은 상대방 당사자에게도 동시에 송부되어야 한다.

4.6 모든 서면은 수신자 또는 상대방 당사자가 제공한 최후 주소로 송부되어야 한다. 문서 형태의 서면은 수령증을 받는 배달, 등기우편, 특급운송, 팩스 또는 수령의 사실이 기록되는 그 밖의 수단에 의해 송부되어야 한다.

4.7 모든 서면의 송달일은 당사자 본인 혹은 그에 의하여 지정된 대리인이 실제로 서면을 수령한 일자이다. 만일 제4조 제6항에 따라 적합하게 문서 형태의 서면이 송부되었으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이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해당 서면은 일반적인 송부 절차에 의하여 이를 수령할 수 있었을 날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4.8 이 규칙에 따른 기간은 제4조 제7항에 따른 수령지 기준 송달간주일 이후의 최초 영업일로부터 기산한다. 전자적 방식에 의한 송부의 경우, 제4조 제6항에 따른 전자우편주소로의 송달일 이후의 최초 영업일로부터 기산한다. 기간 중의 수령지 기준 공휴일 및 휴무일은 기간에 산입된다. 기간의 만료일이 수령지 기준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 그 기간은 그 이후에 도래하는 최초의 영업일에 만료된다.

4.9 DIS는 중재판정부가 정한 기한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또는 이 규칙에 따라 DIS가 정한 모든 기한을 재량으로 연장할 수 있다.

중재신청, 답변, 반대신청 및 절차의 병합

제5조 중재신청, 피신청인에게로의 송달, 관리비용

5.1 이 규칙에 따라 중재를 개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DIS에 중재신청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2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i) 당사자들의 이름과 주소
- (ii) 신청인 측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 (iii) 구체적 신청취지
- (iv) 수량화된 신청금액 및 수량화되지 않은 신청의 추정 금전 가치
- (v) 신청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상황에 관한 기술
- (vi) 신청인이 원용하는 중재합의
- (vii) 이 규칙에서 요구하는 경우, 중재인의 지명
- (viii) 중재지, 중재언어 및 준거법에 대한 모든 사항 또는 제안

5.3 신청인은 DIS가 정한 기한 내에 중재절차의 개시 당시에 시행 중인 요율표(부칙 2)에 따른 관리비용을 DIS에 납입하여야 한다. DIS는 해당 기한 내에 관리비용이 납입되지 않을 경우 제42조 제5항에 따라 중재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5.4 신청인이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부수의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DIS가 판단하기에 신청서가 제5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DIS는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기한을 정할 수 있다. 신청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필요부수를 추가 제출하지 않거나 제5조 제2항 (ii)호, (iv)호, (vij)호 또는 (viii)호에 따라 보완하지 않을 경우, DIS는 제42조 제6항에 따라 중재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제5조 제2항 (i)호, (iii)호, (v)호 및 (vi)호에 따른 서류의 보완에는 제6조 제2항을 적용한다.

5.5 DIS는 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부한다. 제5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DIS는 그 송부를 보류할 수 있다.

제6조 중재개시

6.1 중재는 최소한 제5조 제2항 (i)호, (iii)호, (v)호 및 (vi)호에 열거된 사항을 포함하는 신청서가 첨부서류의 제출 유무와는 관계없이 적어도 제4조 제2항이 요구하는 두 가지 방식 중의 하나로 DIS에 접수된 일자에 개시한다.

6.2 신청인이 제5조 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제5조 제2항 (i)호, (iii)호, (v)호 및 (vi)호에 따라 신청서를 보완하지 못한 경우, DIS는 해당 신청에 대한 심리를 종료할 수 있다. 이는 신청인이 새로운 절차에서 동일한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제7조 피신청인의 통지, 답변서 및 반대신청

7.1 피신청인은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DIS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i) 이 규칙에서 요구하는 경우, 중재인의 지명
- (ii) 중재지, 중재언어 및 준거법에 대한 모든 사항 또는 제안
- (iii) 신청서에 대한 답변("답변서") 제출기한의 연장을 위한 제7조 제2항에 따른 기한연장신청서

7.2 피신청인은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DIS는 최대 30일까지 이 기한을 연장한다.

7.3 피신청인이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답변서 제출을 위한 총 75일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이보다 장기의 기한을 허락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경우, DIS는 중재판정부가 그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할 때까지 우선 임시적으로 기한 연장을 한다.

7.4 답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i) 당사자들의 이름과 주소
- (ii) 피신청인측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 (iii) 답변서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상황에 관한 기술
- (iv) 구체적 신청취지
- (v) 중재합의,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및 분쟁금액에 대한 모든 사항

7.5 반대신청은 가능한 답변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제5조 제2항이 준용된다. 반대신청은 DIS에 제출되어야 한다.

7.6 피신청인은 중재절차의 개시 당시에 시행 중인 요율표(부칙 2)에 따라 반대신청에 대한 관리비용을 DIS에 납입하여야 한다. DIS는 해당 기한 내에 관리비용이 납입되지 않는 경우 제42조 제5항에 따라 반대신청에 대한 중재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7.7 피신청인이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부수의 반대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DIS가 판단하기에 반대신청서가 제7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DIS는 피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기한을 정할 수 있다. 피신청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필요부수를 추가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하지 않을 경우, DIS는 제42조 제6항에 따라 중재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7.8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중재판정부에게 반대신청서를 송부하지 않았을 경우, DIS가 이를 송부한다. 제7조 제6항 또는 동조 제7항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대신청서의 송부를 보류할 수 있다.

7.9 중재판정부는 반대신청에 대한 답변을 위한 합리적인 기한을 정한다.

제8조 중재절차의 병합

8.1 DIS는 일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 규칙에 따라 진행 중인 2개 또는 그 이상의 중재사건을 해당 중재사건들의 모든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하나의 단일한 중재절차로 병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병합은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른 중재판정부의 결정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8.2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가장 먼저 개시된 중재로 절차가 병합된다.

중재판정부

제9조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 그리고 고지의무

9.1 모든 중재인은 중재의 전 과정에서 공정하고 당사자들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당사자들이 합의한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9.2 당사자들은 제9조 제1항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중재인을 지명할 수 있다. DIS는 요청이 있는 경우 중재인을 제안할 수 있다.

9.3 모든 중재인 예정자는 중재인 직 수락여부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9.4 중재인 예정자는 중재인 직을 수락하는 경우에 본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 당사자들이 합의한 자격요건이 있는 경우 이를 충족한다는 점, 중재의 전 과정 동안의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선언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중재인 예정자는 본인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대하여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아 당사자들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사실과 상황 모두에 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9.5 DIS는 제 9조 제3항 및 동조 제4항에 따른 각 중재인 예정자의 선언서 및 공개사항을 당사자들에게 전달하고, 해당 중재인 예정자의 선정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한다.

9.6 모든 중재인은 중재의 전 과정 동안 제9조 제4항에 해당하는 어떠한 사실관계나 상황에 대하여 당사자들, 다른 중재인들과 DIS에 즉시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할 지속적 의무를 가진다.

9.7 이에 더하여,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제10조부터 제13조 및 제20조를 중재판정부의 구성에 적용한다.

제10조 중재인의 수

10.1 당사자들은 단독중재인 또는 3인이나 다른 홀수의 중재인들에 의해 중재판정부가 구성되도록 합의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더라도 제16조 제4항은 적용된다.

10.2 만일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수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 일방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단독중재인으로 구성될 것을 DIS에 신청할 수 있다. DIS 중재평의회는 상대방 당사자의 입장을 들은 후 해당 신청에 대하여 결정한다. 단독중재인의 선정에 대한 신청이 없거나 그러한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부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한다.

제11조 단독중재인

중재판정부가 단독중재인으로 구성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공동으로 단독중재인을 지명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DIS가 정한 기한 내에 공동으로 단독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2항에 따라 DIS 중재인선정위원회가 단독중재인을 선택 및 선정한다. 이 경우 모든 당사자들이 동일한 국적이거나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단독중재인은 당사자들과 다른 국적이어야 한다.

제12조 3인 중재판정부

12.1 중재판정부가 중재인 3인으로 구성되는 경우 각 당사자가 1인씩 배석중재인을 지명한다. 당사자가 배석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2항에 따라 DIS 중재인선정위원회가 배석중재인을 선택 및 선정한다.

12.2 배석중재인들은 DIS로부터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중재판정부의 의장중재인을 공동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당사자들과 배석중재인들은 의장중재인의 선택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12.3 배석중재인들이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의장중재인을 공동으로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DIS 중재인선정위원회는 제13조 제2항에 따라 의장중재인을 선택 및 선정한다. 이 경우 모든 당사자들이 동일한 국적이거나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의장중재인은 당사자들과 다른 국적이어야 한다.

제13조 중재인의 선정

13.1 중재판정부의 모든 중재인은 DIS에 의하여 선정된다. 이는 일방 당사자 또는 배석중재인에 의해 지명된 경우에도 그러하다.

13.2 제13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한 중재인 선정은 DIS 중재인선정위원회가 결정한다.

13.3
지명된 중재인의 선정에 대해 어느 당사자도 제9조 제5항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DIS 사무총장도 중재인의 선정을 결정할 수 있다.

13.4
중재판정부는 모든 중재인들이 선정됨으로써 구성된다.

13.5
DIS가 요청한 금액이 전액 납입되기 전까지 DIS는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개별 중재인의 선정을 보류할 수 있다.

제14조 중재판정부에 의한 중재절차의 진행

14.1
중재판정부가 제13조 제4항에 따라 구성되면 DIS는 중재판정부와 당사자들에게 중재절차가 향후 중재판정부에 의해 진행될 것임을 알린다.

14.2
2인 이상의 중재인에 의한 중재절차에서 중재판정부의 모든 결정은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다수결에 의한다. 다수결이 성립되지 못하는 경우 의장중재인이 단독으로 결정한다.

14.3
의장중재인은 예외적으로 중재판정부의 배석중재인들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개별 절차 문제에 관하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 중재인 기피

15.1
중재인이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당사자는 제15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2
기피신청서는 기피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상황에 대한 기술과 함께 기피신청 당사자가 해당 내용을 처음 알게 된 시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기피신청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처음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DIS에 제출되어야 한다.

15.3
DIS는 기피신청서를 기피 대상이 된 당해 중재인 및 나머지 중재인들과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한다. DIS는 접수된 모든 의견들을 당사자들과 각 중재인에게 전달한다.

15.4
DIS 중재평의회는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다.

15.5
중재판정부는 기피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질때까지 중재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제16조 중재인 직무의 조기종료

16.1
중재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일자에 종료된다.
(i) DIS 중재평의회가 해당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인용하는 경우
(ii) DIS 중재평의회가 해당 중재인의 사임을 수리하는 경우
(iii) 중재인의 사망
(iv) DIS 중재평의회가 제16조 제2항에 따라 중재인을 해임하는 경우
(v) 모든 당사자들이 해당 중재인 직무의 조기종료에 대해 합의하여 DIS에 통지하는 경우

16.2
DIS 중재평의회는 중재인이 이 규칙에 따른 중재인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또는 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장차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중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중재인 해임절차는 사무규정(부칙 1) 제9조에 규정되어 있다.

16.3
제16조 제4항 경우를 제공하고는 중재인의 직이 조기종료하면 제16조 제5항에 따라 보궐중재인을 선정한다.

16.4
DIS 중재평의회는 모든 당사자와 나머지 중재인들이 동의하는 경우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보궐중재인의 선정을 유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절차는 나머지 중재인들만으로 속행된다.

16.5
보궐중재인의 선정은 교체되는 중재인의 선정에 적용되었던 절차에 따른다. DIS 중재평의회는 모든 당사자들과 나머지 중재인들의 의견을 듣고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 이 규칙에 따른 다른 절차를 적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16.6
중재판정부는 보궐중재인이 선정되면 이미 진행된 절차를 반복함이 없이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중재판정부가 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반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다수계약절차, 다수당사자절차 및 추가 당사자의 인입

제17조 다수계약절차

17.1

둘 이상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또는 이와 관련되는 복수의 청구는 중재의 모든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 단일한 중재절차("다수계약절차")에서 판단할 수 있다. 당사자들 모두가 그러한 합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특히 그러한 취지의 명시적인 서면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이에 대해 결정한다.

17.2

복수의 청구가 둘 이상의 중재합의에 기초한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중재조항들이 양립 가능하다면 이를 단일한 중재절차에서 판단할 수 있다. 각 중재조항들이 양립 가능하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17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판정부가 이에 대해 결정한다.

17.3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재판정부의 구성에 대해 중재합의 조항들이 양립 불가능하여 이 규칙에 따른 중재판정부의 구성이 어렵다고 DIS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42조 제4항 (ii)호가 적용된다.

17.4

다수계약절차에 다수의 당사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더하여 제18조(다수당사자절차)도 적용된다.

제18조 다수당사자절차

18.1

다수의 당사자들 모두의 청구가 하나의 중재절차에서 판단되도록 하는 중재합의가 있거나 당사자들 모두가 다른 방식으로 이와 같은 합의를 하는 경우, 하나의 중재절차에서 제기된 다수 당사자들의 청구들은 해당 중재절차에서 판단될 수 있다("다수당사자절차"). 당사자들 모두가 그러한 합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특히 그러한 취지의 명시적인 서면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이에 대해 결정한다.

18.2

다수당사자절차에서 제기된 청구들이 복수의 계약들로부터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18조에 더하여 제17조(다수계약절차)가 적용된다.

제19조 추가당사자의 인입

19.1

중재인이 선정되기 전 제 3자의 추가를 희망하는 당사자는 추가 당사자에 대한 중재신청서("추가 당사자에 대한 신청서")를 DIS에 접수할 수 있다.

19.2

추가 당사자에 대한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i) 계류 중인 중재사건의 사건번호
 - (ii) 당사자들 및 추가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 (iii) 추가 당사자에 대한 구체적 신청취지
 - (iv) 추가 당사자에 대한 수량화된 신청금액 및 수량화되지 않은 신청의 추정 금전가치
 - (v) 추가 당사자에 대한 신청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상황에 관한 기설
 - (vi) 추가 당사자에 대한 중재신청을 하는 당사자가 원용하는 중재합의
- 제5조 및 제6조의 나머지 조항들은 추가 당사자에 대한 신청서에 준용된다.

19.3

추가 당사자는 DIS가 정하는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i) 중재판정부의 구성에 관한 의견
- (ii) 제7조 제4항의 요건을 준용한 답변서

19.4

추가 당사자는 그 답변서에서 중재의 어느 당사자에게든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제7조 제5항부터 동조 제9항은 해당 청구에 준용된다.

19.5

추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추가 당사자에 대한 청구를 계류 중인 중재절차에서 다루어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이에 대해 결정한다. 중재판정부는 이를 판단함에 있어 제18조(다수당사자절차)를 적용하고 복수의 계약들로부터 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제17조(다수계약절차) 또한 적용한다.

제20조 다수당사자절차의 3인 중재판정부

20.1

다수당사자절차(제18조)의 경우 양 배석중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명된다.

- (i) 신청인 또는 다수의 신청인들이 공동으로 한 명의 배석중재인을 지명
- (ii) 피신청인 또는 다수의 피신청인들이 공동으로 다른 한 명의 배석중재인을 지명

20.2

단일의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배석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DIS 중재인선정위원회가 제1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배석중재인을 선택 및 선정한다.

20.3

다수의 신청인들 또는 피신청인들이 공동으로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DIS 중재인선정위원회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재량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절차에 따른다.

- (i) 제13조 제2항에 따라 공동지명을 하지 못한 당사자측 배석중재인을 선택 및 선정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지명한 배석중재인을 선정
- (ii) 제13조 제2항에 따라 공동지명을 하지 못한 당사자측과 상대방 당사자측 양 배석중재인들 모두를 선택 및 선정; 이 경우 당사자에 의한 기존의 지명은 무효처리

20.4

의장중재인의 지명 또는 선정에는 제12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이 적용된다.

20.5

제19조에 따라 추가당사자가 인입하는 경우 그 추가 당사자는 오직 신청인(들) 또는 피신청인(들)과 공동으로 배석중재인을 지명할 수 있다. 공동지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DIS 중재인선정위원회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재량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른다.

- (i) 배석중재인에 대한 제20조 제3항 (i)호의 준용
 - (ii) 배석중재인에 대한 제20조 제3항 (ii)호의 준용
 - (iii) 제13조 2항에 따른 배석중재인들 및 의장중재인의 선택 및 선정
- 제20조 제5항 (i)호 및 (ii)호가 적용되는 경우, 의장중재인의 지명 또는 선정에는 제12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이 적용된다. 제20조 제5항 (ii)호 및 (iii)호가 적용되고 DIS 중재인선정위원회에 의한 선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 의한 기존의 지명은 무효처리된다.

중재절차

제21조 절차

21.1

모든 당사자들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모든 당사자는 변론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21.2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절차에는 이 규칙이 적용된다.

21.3

이 규칙에 정함이 없고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이상 중재판정부가 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은 후 재량으로 절차를 정한다.

21.4

중재판정부는 중재지의 중재법상 강행규정들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2조 중재지

22.1

중재지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이를 정한다.

22.2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중재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중재절차의 일부 또는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제23조 중재언어

중재언어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중재언어를 정한다.

제24조 준거법

24.1

당사자들은 분쟁의 본안에 적용될 실체법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

24.2

분쟁의 본안에 적용될 실체법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실체법을 적용한다.

24.3
중재판정부는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때에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 조항에 따르며 기존의 거래관행을 고려하여야 한다.

24.4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이에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형평과 선의 원칙에 따라 (*ex aequo et bono*, 내지 *amiable compositeur*로써) 결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25조 임시적 처분

25.1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임시적 또는 보전 처분을 명할 수 있고, 그러한 처분을 변경,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상대방 당사자가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신청을 전달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처분과 관련하여 적절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어느 당사자에게든 명할 수 있다.

25.2
중재판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을 시 처분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전달 및 상대방 당사자의 의견 청취없이 해당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늦어도 처분명령과 함께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신청서를 전달하고 지체 없이 의견 표명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상대방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처분을 확인, 변경, 정지 또는 취소한다.

25.3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관할법원에 임시적 또는 보전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 화해의 권고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중재 절차의 각 단계에서 분쟁 전체 또는 개별 분쟁사안에 대한 협력적 쟁점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한다.

제27조 절차의 효율적 진행

27.1
중재판정부와 당사자들은 분쟁의 복잡성 및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7.2
중재판정부는 원칙적으로 판정부의 구성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27.3
사건관리회의에 외부 대리인 외에 당사자들 본인이 직접 또는 사내담당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권장된다. 제2조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분쟁관리전문인은 중재판정부가 이를 허락할 경우 사건관리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27.4
중재판정부는 사건관리회의에서 제21조에 따라 중재절차에 적용되는 절차규정과 절차진행일정을 당사자들과 협의한다. 중재판정부는 절차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당사자들과 구체적으로 협의한다.

- (i) 부칙 3(절차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에 규정된 각 조치들의 적용 여부
- (ii) 부칙 4(신속절차규정)의 적용 여부
- (iii) 분쟁 전체 또는 개별 분쟁쟁점에 대한 우호적 해결을 도출하기 위한 조정 또는 여타 우호적 분쟁 해결 절차의 활용가능성

27.5
중재판정부는 사건관리회의 중 또는 직후 절차명령을 내리고 절차진행일정을 확정하여야 한다.

27.6
중재판정부는 필요한 경우 사건관리회의를 추가로 개최하고 절차명령을 추가적으로 내리거나 절차진행일정을 수정할 수 있다.

27.7
중재판정부는 첫 사건관리회의 또는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사건관리회의를 통해 전문가의 선임여부와 전문가 관련 절차의 효율적인 진행방안에 대해 당사자들과 협의하여야 한다.

27.8
중재판정부는 모든 절차명령과 절차진행일정 및 그에 대한 수정사항을 DIS에도 전달하여야 한다.

제28조 사실관계의 확정, 중재판정부에 의한 전문가 선임

28.1
중재판정부는 분쟁사안을 판단하는 데 관련 있고 중요한 사실관계를 확정한다.

28.2
중재판정부는 이를 위해 전문가를 선임하거나 당사자들이 요청하지 않은 증인을 신문하거나, 당사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적 기록에 대한 제출 및 접근을 명하는 등과 같은 증거조사 조치를 직권으로 취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에 한정되지 않는다.

28.3
중재판정부는 전문가를 선임하기 전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중재판정부에 의해 선임된 전문가는 중재의 전 과정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DIS가 중재인에 대하여 수행하는 역할을 중재판정부가 전문가에 대하여 인계하는 선에서 중재판정부는 제9조 및 제15조를 그가 선임하는 전문가에 준용한다.

제29조 구술심리

29.1

중재판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술심리를 개최한다.

- (i) 모든 당사자들이 이에 합의하는 경우
- (ii) 어느 당사자가 이를 요청하고 모든 당사자들이 달리 구술심리를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으로 중재판정부가 당사자들과 협의 후에 구술심리가 필요하다고 재량으로 판단하면 구술심리를 개최한다.

29.2

구술심리는 속기록을 비롯한 적절한 방식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제30조 피신청인의 해태

피신청인의 해태가 있을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의 속행을 명한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피신청인의 해태를 이유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제31조 절차의 종결

중재판정부는 최종구술심리와 허용된 최종서면의 제출 중 더 늦게 도래하는 절차 이후 절차명령을 통해 절차의 종결을 선언하고 이를 DIS에 전달한다. 절차의 종결 이후 서면이나 증거자료는 중재판정부의 사전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될 수 있다.

비용

제32조 중재비용

중재비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 (i) 중재인의 보수와 경비
- (ii) 중재판정부에 의해 선임된 전문가의 보수와 경비
- (iii) 변호사 선임 비용, 전문가의 보수 및 증인의 경비를 포함한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에게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과 경비
- (iv) DIS의 관리비용

제33조 비용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

33.1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 진행 중 언제든지 중재비용에 관한 결정(잠정결정 포함)을 내릴 수 있다. DIS만이 제32조 (i)호 및 (iv)호의 사항과 관련된 결정권한을 가진다.

33.2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 사이의 비용에 관한 부담비율을 결정한다.

33.3

중재판정부는 재량으로 중재비용을 결정한다.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항을 고려한다. 특히 중재판정부는 중재의 결과와 절차의 효율적인 진행에 당사자들이 기여한 정도를 고려할 수 있다.

제34조 중재인의 보수 및 경비

34.1

중재인들은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보수와 경비의 상환을 구할 권리를 갖는다.

34.2

중재인의 보수 및 경비는 제34조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절차의 개시 당시 시행 중인 요율표(부칙 2)에 따라 계산하되 DIS 중재평의회는 제37조에 따라 중재인의 보수를 감액할 수 있다. 당사자들과 중재인들 간 보수에 관한 별도의 합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중재인들의 경비는 중재절차의 개시 당시 시행 중인 요율표(부칙 2)에서 정하는 범위 및 액수 내에서 상환된다.

34.3

DIS는 중재절차의 종결 이후 중재인들의 보수와 경비를 지급한다. 중재판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DIS 중재평의회는 중재절차의 단계를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의 중재인 보수를 선지급할 수 있다. 모든 보수, 경비 또는 중재인들의 보수 선불금은 제35조 제1항에 따른 예납금에서 DIS가 지급한다.

34.4

중재절차가 중국판정 이전에 종결되거나 화해중재판정에 의해 종결되는 경우에는 DIS 중재평의회는 당사자들 및 중재판정부와 협의후 재량으로 중재인들의 보수를 결정한다. DIS 중재평의회는 이러한 결정을 할 때에 종결 당시 중재절차의 단계와 분쟁의 복잡성 및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중재인들의 성실성과 능률성 등을 참작한다.

34.5

중재인의 직무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조기종료되는 경우 DIS 중재평의회는 직무가 조기종료된 중재인의 보수의 지급여부와 그 금액, 그리고 경비의 상환여부에 대해 재량으로 결정한다. DIS 중재평의회는 이러한 결정을 할때에 직무의 조기종료 사유와 중재의 제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5조 중재판정부의 보수와 비용을 위한 예납

35.1

당사자들은 중재인들의 보수와 경비를 위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DIS가 제36조에 기초하여 산정하고 중재절차 진행 중에 확정하는 금액("예납금")을 납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35.2

DIS는 중재판정부의 구성 전 임시예납금을 확정하고 당사자들의 납입 기한을 정한다. DIS는 재량으로 양 당사자 또는 일방 당사자에게 임시예납금의 납입을 요청할 수 있다.

35.3

그 이후 DIS는 예납금을 확정하고 당사자들의 납입 기한을 정한다. 예납금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균분하여 납입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미 납입한 임시예납금은 공제된다. 예납금액은 임시예납금액과 동일할 수 있다.

35.4

어느 당사자가 임시예납금 또는 예납금의 자기 부담부분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가 이를 대신 납입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들간 중재비용의 부담에 관한 제33조 제2항에 따른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5.5

당사자들이 임시예납금 또는 예납금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 DIS는 제42조 제5항에 따라 중재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35.6

DIS는 언제든지 임시예납금 또는 예납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35.7

다수당사자절차(제18조)의 경우에 DIS 중재평의회는 각 당사자에 대한 임시예납금 또는 예납금의 부담부분을 개별적으로 상이한 금액으로 확정하거나 여러 건의 예납금을 확정할 수 있다.

제36조 산정근거

36.1

임시예납금, 예납금 및 DIS 관리비용은 분쟁금액을 기초로 하여 중재절차의 개시 당시에 시행 중인 요율표(부칙 2)에 따라 산정한다. 이는 추후 증액과 감액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36.2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분쟁금액을 결정한다.

36.3

당사자들은 제36조 제2항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분쟁금액을 결정한 날로부터 14일내에 DIS 중재평의회에 그 중재판정부의 결정을 재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DIS 중재평의회는 중재판정부가 결정한 분쟁금액을 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DIS 중재평의회는 확정 또는 변경 결정은 제36조 제1항에 따른 임시예납금, 예납금 및 관리비용의 산정을 위한 목적에 한정된다.

중재판정 등에 의한 중재절차의 종료

제37조 중국판정의 기한

중재판정부는 제39조 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최종구술심리 또는 최종서면의 제출 중 더 늦게 도래하는 절차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국판정문을 DIS가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한다. DIS 중재평의회는 중재판정부가 중국판정을 내리는 데 소요된 시간을 기준으로 1인 또는 다수의 중재인의 보수를 재량으로 감액할 수 있다. DIS 중재평의회는 보수의 감액을 결정할 때에 중재판정부와 협의하여야 하고, 사건의 제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8조 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최종적이고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제39조 중재판정의 내용, 형식 및 송달

39.1

모든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i) 당사자들, 대리인, 중재인들의 성명과 주소
- (ii) 중재판정부의 결정과 그 근거가 되는 이유. 단, 당사자들이 이유를 적시할 필요가 없다고 동의하거나 제41조에 따른 화해중재판정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iii) 중재지
- (iv) 중재판정일자

39.2

중재판정부는 중국판정문에 중재비용을 기재하고, 제33조에 따라 당사자들간 중재비용의 부담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DIS는 제32조 (i)호 및 (iv)호에 따른 중재비용 금액을 중재판정부에게 알려야 한다.

39.3

중재판정부는 DIS가 검토할 수 있도록 판정문 초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DIS는 중재판정부에게 형식에 대한 의견이나 그 밖의 구속력 없는 수정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판정의 내용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39.4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에 서명하여야 한다. 만약 중재인이 판정문에 서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판정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39.5

중재판정부는 각 당사자와 DIS에 각 1부씩 제공하기 위해 요구되는 수의 서명된 판정문 정본을 DIS에 제출하여야 한다.

39.6

DIS는 모든 예납금과 관리비용이 완납된 경우 각 당사자에게 판정문 정본 1부를 송달한다. 제4조 제6항 및 동조 제7항이 그 송달에 준용된다.

39.7

판정은 판정문에 기재된 중재지에서 해당 일자에 내려진 것으로 본다.

제40조 중재판정의 정정

40.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i) 오산, 오기, 오식 그리고 그 밖의 오류를 정정하고,
- (ii) 중재절차에서 제기되었으나 판정문에서 판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보충하는 판정을 내린다.

40.2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재판정을 해석하고 판정 주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40.3

제40조 제1항 또는 동조 제2항에 따른 당사자의 요청은 중재판정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DIS에 제출되어야 한다. DIS는 그러한 요청을 지체 없이 중재판정부에 전달한다.

40.4

중재판정부는 상대방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의장중재인이 위 요청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

40.5

중재판정부는 그러한 요청이 없더라도 당사자들과 협의 후 재량으로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정정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정정은 제39조 제7항에 따라 중재판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40.6

중재판정의 정정 결정에는 제38조 및 제39조가 준용된다.

제41조 화해중재판정

41.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달리 그러지 않아야 할 중대한 다른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들의 화해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41.2

당사자들이 요청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절차에서 당사자들이 화해에 이르렀거나 어떤 결정이 내려진 경우, 달리 그러지 않아야 할 중대한 다른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 DIS 조정규칙
- DIS 화해규칙
- DIS 재정규칙
- DIS 전문가 권고규칙
- DIS 전문가 결정규칙

41.3

화해중재판정에는 제38조 내지 제40조가 준용된다.

제42조 중국판정 이전 중재절차의 종료

42.1

중재절차는 중국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제42조 제2항에 따라 중재판정부에 의해 또는 제42조 제4항, 동조 제5항 내지 동조 제6항에 따라 DIS에 의해 종료될 수 있다.

42.2

중재판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재를 종료한다("종료결정").

- (i) 당사자들이 중재절차의 종료에 합의하는 경우
- (ii) 일방당사자가 종료결정을 신청하고 다른 당사자들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그러한 이의 제기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에게 중재절차의 속행을 요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중재판정부가 판단하는 경우
- (iii) 중재판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중재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 (iv) 중재판정부가 그 밖의 사유로 중재절차가 속행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42.3

종료결정은 당사자가 추후 새로운 절차에서 동일한 청구를 다시 제기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2.4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DIS 중재평의회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중재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 (i) 당사자들이 중재절차의 종료에 합의하는 경우
- (ii) DIS가 이 규칙에 따라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iii) DIS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중재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 (iv) DIS가 그 밖의 사유로 중재절차가 속행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42.5

DIS 중재평의회는 중재판정부의 구성 이전 또는 그 이후 당사자들이 이 규칙에 따른 DIS의 임시예납금, 예납금이나 관리비용을 정해진 기한 내에 완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중재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이미 구성된 경우, 중재판정부는 DIS와의 협의를 거쳐 DIS 중재평의회가 중재절차의 종료 판단시까지 그 중재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42.6

DIS는 당사자가 DIS가 정한 기한 내에 제5조, 제7조 또는 제19조 상의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5조 제4항 제2문에 따라 언제든지 중재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42.7

DIS가 제42조 제4항, 동조 제5항 또는 동조 제6항에 따라 중재절차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종료하더라도 당사자가 추후 새로운 절차에서 동일한 청구를 다시 제기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타

제43조 이의신청권의 상실

당사자가 이 규칙 또는 그 밖의 중재에 적용되는 규정이 준수되지 않았음을 알게 된 후 즉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추후 해당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4조 비밀유지의무

44.1 당사자들과 대리인, 중재인들, DIS의 임직원 및 그 외 DIS와 연계되어 중재에 관여하는 모든 이들은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절차에 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해당 중재의 존재, 당사자들의 명칭, 청구의 성격, 증인 또는 전문가의 이름, 절차명령 또는 판정 및 대중에 공개되지 아니한 증거자료는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44.2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또는 법적 의무로서 요구되거나 또는 중재판정의 승인, 집행이나 취소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44.3 DIS는 당사자의 명칭이 표시되지 않고 그로부터 특정 사건이 식별되지 않는 범위에서 중재절차에 대한 통계자료와 기타 일반적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DIS는 당사자들이 사전 서면동의를 한 경우에 한하여 중재판정문을 공개할 수 있다.

제45조 면책

45.1 중재인은 고의적인 의무 위반의 경우가 아닌 한 중재절차 내에서의 그 결정과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5.2 중재인, DIS와 그 산하기관, 임직원, 그 외 DIS와 연계되어 중재에 관여하는 모든 이들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의무 위반이 아닌 한 중재와 관련된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부칙 1 사무규정

제1조 적용범위

이 규칙에 따른 중재절차의 행정을 위한 이 규정은(“사무규정”) DIS 중재평의회, DIS 중재인선정위원회 및 DIS 사무국의 업무에 적용된다.

제2조 DIS 중재평의회, DIS 중재인선정위원회 및 DIS 사무국의 권한

2.1 DIS 중재평의회와 DIS 중재인선정위원회는 이 규칙이 위임한 바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그 권한과 직무를 수행한다. DIS 사무국은 그러한 업무를 지원한다.

2.2 DIS 사무국은 DIS 사무총장(“사무총장”)의 지휘 아래 이 규칙이 위임하는 바 또는 DIS가 중재절차의 적합한 행정을 위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바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그 권한과 직무를 수행한다. DIS 사무국은 언제든지 DIS 중재평의회, 본 사무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DIS 사건위원회, 또는 DIS 중재인선정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다.

제3조 DIS 중재평의회

3.1 DIS 중재평의회는 최소 열다섯 명의 위원(“평의회 위원”)으로 구성된다. 평의회 위원들은 최소 5개의 서로 다른 국가의 국민이어야 하며, 국내 및 국제 중재 실무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DIS 윤리강령 제6조의 규정은 평의회 위원들에게 적용된다.

3.2 DIS 정관 제7조 제2항에 따라 구성된 DIS 이사회 이사진은 DIS 자문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평의회 위원들을 선임한다. DIS 이사회의 이사진, DIS 중재인선정위원회 위원들 및 DIS 사무국 직원들은 평의회 위원이 되지 못한다.

3.3 중재평의회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한 차례 연임될 수 있다.

3.4 DIS 중재평의회는 실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중요한 주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1년에 최소 한 번의 총회를 개최한다. DIS 사무국은 총회에 참석하며, DIS 중재인선정위원회의 위원들을 총회에 초대할 수 있다. 총회 참석은 직접적으로 또는 적절한 통신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3.5
중재평의회 의원들은 그들 가운데에서 1인의 의장 및 최대 2인의 부의장을 선출한다. 의장 또는 의장 유고 시에는 부의장 가운데 한 명이 총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3.6
특정 중재와 관련하여 중재평의회에게 위임된 모든 결정은 본 내부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중재사건을 배정받은 사건위원회만이 집행한다. DIS 중재평의회는 DIS 사건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검토, 수정 또는 파기할 수 없다.

3.7
DIS 중재평의회는 DIS 사무국과의 협의를 거쳐 모든 DIS 사건위원회가 준수하여야 하는 내부지침을 공표할 수 있다.

제4조 DIS 사건위원회

4.1
DIS 사무국은 중재사건의 감독을 위하여 각 3인의 중재평의회 위원들로 구성된 DIS 사건위원회(각각 "사건위원회")를 최소한 5개 설립한다.

4.2
DIS 사무국은 중재신청서의 접수 후 그 중재를 감독할 사건위원회에 사건을 배정한다. DIS 사무국은 중재 진행 중 언제든지 한 사건위원회에 배정된 중재의 감독을 다른 사건위원회로 재배정하거나 한 사건위원회의 중재평의회 위원을 다른 평의회 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 DIS 사무국은 특히 업무량, 이해충돌 및 중재평의회 위원의 임무수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유를 고려하여 본 사무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른 모든 결정을 재량으로 내릴 수 있다.

4.3
어떠한 중재사건과 이해충돌이 있는 중재평의회 위원은 즉시 그러한 이해충돌을 DIS 사무국에 고지하여야 하고 해당 이행충돌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그 위원은 해당 중재사건과 관련된 결정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 위원은 해당 중재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추가적 정보나 문건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미 수령한 모든 정보나 문건은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4.4
사건위원회의 결의는 사건위원회 위원 2인 이상의 참석과 사건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4.5
사건위원회의 결정을 위하여 DIS 사무국은 유사 사례에서 다른 사건위원회가 취한 기존 실무례가 포함된 서면을 준비하고 이에 구속력 없는 권고안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 DIS 전문사건위원회

5.1
상공회의소 규칙이 이 규칙을 인용함에 따라 DIS가 관리하는 중재사건은 모두 동일한 사건위원회에 배정되어야 한다.

5.2
DIS는 언제든지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중재유형 등을 위한 전문사건위원회를 추가로 설립할 수 있다.

제6조 DIS 중재인선정위원회

6.1
DIS 중재인선정위원회는 3인의 정위원과 3인의 임시위원으로 구성된다. DIS 중재인선정위원회 위원은 국내 및 국제 중재 실무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DIS 윤리강령 제3조가 중재인선정위원회 위원에게 적용된다.

6.2
DIS 정관 제7조 제2항에 따라 구성된 DIS 이사회 이사진은 DIS 자문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DIS 중재인선정위원회 위원들을 선임한다. DIS 이사회의 이사진들, DIS 중재평의회 위원들 및 DIS 사무국의 직원들은 DIS 중재인선정위원회 위원이 되지 못한다.

6.3
DIS 중재인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될 수 있다.

6.4
어떠한 중재사건과 이해충돌이 있는 DIS 중재인선정위원회 위원은 지체 없이 그러한 이해충돌을 DIS 사무국에 고지하여야 하고 해당 이해충돌 내용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그 위원은 해당 중재사건과 관련된 결정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 DIS 중재인선정위원회 위원은 해당 중재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추가적 정보나 문건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미 받은 모든 정보나 문건은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6.5
DIS 중재인선정위원회의 결정은 정위원들에 의한다. 만일 정위원이 이해충돌 등의 사유로 그 직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DIS 사무국이 지정한 임시위원이 해당 정위원을 대신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6.6
DIS 중재인선정위원회의 결의는 과반수에 의한다.

6.7
DIS 중재인선정위원회의 결정을 위하여 사무국은 유사 사례에서 다른 중재인선정위원회가 취한 기존 실무례가 포함된 서면을 준비하는데 이는 구속력 없는 권고안을 포함할 수 있다.

제7조 DIS 사무국

7.1 사무부총장의 지휘에 따라 사건관리부서가 DIS 사무국 내에서 중재사건을 담당한다.

7.2 사무부총장은 그의 부재 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 사무부총장 또는 DIS 사무국의 다른 DIS 직원에게 이 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른 중재인 선정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7.3 DIS 사무국은 당사자들과 중재인들에게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또는 중재절차의 적합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안내문과 기타 자료를 배포할 수 있다.

제8조 서면, 통지, 이유, 비밀유지의무

8.1 이 규칙에 따라 DIS에 제출되는 모든 서면과 DIS 중재평의회, DIS 사건위원회 또는 DIS 중재인선정위원회를 수신인으로 하는 모든 교신은 DIS 사무국으로 송부된다.

8.2 중재와 관련하여 당사자들 또는 중재인들에게 발송되는 DIS 중재인선정위원회 및 DIS 사건위원회의 모든 통지와 결정에 대한 교신은 오로지 DIS 사무국에 의해 발송된다.

8.3 DIS 중재인선정위원회와 DIS 사건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는다.

8.4 중재 및 DIS 중재인선정위원회, DIS 중재평의회, DIS 사건위원회와 DIS 사무국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와 문서는 이 규칙 제44조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개되지 않는다.

제9조 이 규칙 제16조 제2항에 의한 중재인의 해임

9.1 당사자는 누구든지 중재인이 이 규칙에 따른 중재인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또는 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장래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 사무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그의 해임을 신청할 수 있다 (“해임신청”).

9.2 해임신청은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상황을 설명하고, 해임신청을 하는 당사자가 해당 내용을 처음 알게 된 시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해임신청은 그 해임신청 당사자가 해임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상황에 대해 처음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DIS에 제출되어야 한다.

9.3 DIS는 해당 중재인 및 그 외 중재인들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임신청을 송부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한다. DIS는 접수된 모든 의견을 당사자들과 각 중재인에게 전달한다.

9.4 해당 중재를 배정받은 사건위원회가 이 사무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해임신청에 대하여 결정한다.

9.5 이 사무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중재를 배정받은 사건위원회가 중재인이 이 규칙에 따른 중재인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또는 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장차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건위원회는 해임신청이 없더라도 당사자들 및 모든 중재인들과의 협의 후 그 중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 경과규정

DIS 정관이 변경되기 전까지 DIS 중재인선정위원회에 대한 DIS 정관 제14조가 이 사무규정 제6조보다 우선한다.

부칙 2 요율표

제1항 총칙

- 1.1 이 규칙 제 6조에 따라 해당 중재절차의 개시 당시 시행 중인 이 부칙이 중재절차의 전 과정에 적용된다.
- 1.2 중재인의 보수와 DIS의 관리비용은 이 부칙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분쟁금액을 기초로 계산된다. DIS는 분쟁금액이 수량화되지 않았거나 추산되지 않은 경우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들에게 분쟁금액을 명확히 하도록 요구한다. 당사자들이 DIS가 정한 기한 내에 분쟁금액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경우, 이 부칙 2 제2항 제3호 및 제3항 제3호가 적용된다.
- 1.3 당사자들은 이 규칙 제32조 (i)호, (ii)호 및 (iv)호에 따른 중재비용을 당사자들 사이의 비용상환청구와는 관계없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제2항 중재인의 보수

- 2.1 중재인의 보수는 분쟁금액을 기초로 아래 요율표에 따라 산정한다.

분쟁금액	배석중재인 수당	의장 중재인 또는 단독 중재인 수당
5,000 € 이하	770 €	1,000 €
5,000.01 € 이상 20,000 € 이하	1,150 €	1,500 €
20,000.01 € 이상 50,000 € 이하	2,300 €	3,000 €
50,000.01 € 이상 70,000 € 이하	3,000 €	4,000 €
70,000.01 € 이상 100,000 € 이하	3,800 €	5,000 €
100,000.01 € 이상 500,000 € 이하	4,450 € + 2% × (분쟁금액 - 100,000 €)	배석중재인 수당 + 30%
500,000.01 € 이상 1,000,000 € 이하	12,450 € + 1.4% × (분쟁금액 - 500,000 €)	배석중재인 수당 + 30%
1,000,000.01 € 이상 2,000,000 € 이하	19,450 € + 1% × (분쟁금액 - 1,000,000 €)	배석중재인 수당 + 30%
2,000,000.01 € 이상 5,000,000 € 이하	29,450 € + 0.5% × (분쟁금액 - 2,000,000 €)	배석중재인 수당 + 30%

5,000,000.01 € 이상 10,000,000 € 이하	44,450 € + 0.3% × (분쟁금액 - 5,000,000 €)	배석중재인 수당 + 30%
10,000,000.01 € 이상 50,000,000 € 이하	59,450 € + 0.1% × (분쟁금액 - 10,000,000 €)	배석중재인 수당 + 30%
50,000,000.01 € 이상 100,000,000 € 이하	99,450 € + 0.06% × (분쟁금액 - 50,000,000 €)	배석중재인 수당 + 30%
100,000,000 € 초과	분쟁금액이 650,000,000 € 이하인 경우: 129,450 € + 0.05% × (분쟁금액 - 100,000,000 €) 분쟁금액이 750,000,000.01 € 이상인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보수의 증액은 없다.	배석중재인 수당 + 30%

- 2.2 반대청구 또는 추가 당사자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 중재신청의 분쟁금액에 반대신청 및 추가 당사자에 대한 신청의 분쟁금액을 합산한 값을 기준으로 보수를 산정한다.
- 2.3 중재신청, 반대신청 또는 추가 당사자에 대한 신청에 분쟁금액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또는 수치화된 청구가 명백히 저평가되었다고 DIS가 판단하는 경우, DIS는 재량으로 결정한 분쟁금액을 기초로 중재인의 보수를 잠정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이는 이 규칙 제36조에 따라 분쟁금액이 결정되기 전까지 적용된다.
- 2.4 중재 당사자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제2.1항의 보수가 초과되는 당사자의 숫자마다 10%씩 증액된다. 그러나 전체 증액금은 총 50%를 초과할 수 없다.
- 2.5 DIS 중재평의회는 법적 또는 사실관계가 특히 복잡한 사안에서 중재판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당사자들의 협의 후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기 제2.1항 및 제2.4항에 따라 산정된 비용의 증액을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DIS 중재평의회는 이러한 비용의 증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분쟁의 복잡성과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특히 중재인들의 소요시간, 성실성과 능률성 및 중재판정부의 협력적 분쟁해결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한다.
- 2.6 이 규칙 제25조에 따른 임시적 처분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상기 제2.5항이 정하는 특히 복잡한 경우에 해당한다.
- 2.7 이 규칙 제16조에 따라 보궐중재인이 선정된 경우 DIS 중재평의회가 보궐중재인의 보수를 재량으로 결정한다.
- 2.8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이미 선정된 중재인은 보수나 경비를 청구할 수 없다.

제3항 DIS의 관리비용

- 3.1 중재신청에 따른 DIS의 관리비용은 다음과 같다.

분쟁금액	DIS의 관리비용
50,000 € 이하	분쟁금액의 2 %, 최소 750 €
50,000.01 € 이상 1,000,000 € 이하	1,000 € + 1 % × (분쟁금액 - 50,000 €)
1,000,000 € 초과	10,500 € + 0.5 % × (분쟁금액 - 1,000,000 €), 최대 40,000 €

- 3.2 반대청구 또는 추가 당사자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 이 부칙 2 제3.1항이 그 관리비용에 준용된다. 이러한 경우 DIS의 관리비용은 이 부칙2 제3.1항 및 제3.2항에 따른 관리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 3.3 중재신청, 반대신청 또는 추가 당사자에 대한 신청에 분쟁금액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또는 수치화된 청구가 명백히 저평가되었다고 DIS가 판단하는 경우, DIS는 재량으로 결정한 분쟁금액을 기초로 관리비용을 잠정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이는 이 규칙 제36조에 따라 분쟁금액이 결정되기 전까지 적용된다.
- 3.4 중재 당사자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 이 부칙 2 제3.1항 및 제3.2항의 관리비용이 초과되는 당사자의 숫자마다 10%씩 증액된다. 그 전체 증액은 총 20,000 유로를 초과할 수 없다.
- 3.5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 절차가 종료된 경우 DIS은 관리비용을 최대 50%까지 감액할 수 있다.
- 3.6 2개 이상의 중재절차가 병합되는 경우, 각 중재절차에서 당사자가 청구하는 분쟁금액을 합산하고, 그 분쟁금액 합산액을 기초로 모든 당사자에 대한 새로운 관리비용이 산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들이 이미 납입한 금액은 공제된다.
- 3.7 이 규칙 제3조 제2항의이 정하는 서면이 독어나 영어가 아닌 언어로 DIS에 제출된 경우 DIS는 관리비용에 추가하여 번역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3.8 중재의 개시 이전에 아래 규칙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당사자들이 이미 납입한 DIS 관리비용은 중재절차 관리비용에서 공제된다. 중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그러한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 해당 절차에 대한 DIS 관리비용이 추가로 청구되지 않는다.
 - DIS 조정규칙
 - DIS 화해규칙
 - DIS 재정규칙
 - DIS 전문가 권고규칙
 - DIS 전문가 결정규칙

제4항 임시에납금과 예납금

- 4.1 이 규칙 제35조에 따라 당사자들이 납입하여야 할 예납금의 총액은 이 부칙 2 제2항에 따른 중재인 예상보수액, 이 부칙 2 제5항에 따른 중재판정부 예상경비액 및 이 부칙 2 제6항에 따른 추가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4.2 DIS는 임시에납금과 예납금을 확정한다. DIS는 임시에납금 산정 시 중재판정부 보수의 총액을 고려하거나 잠정적으로 그 일부를 고려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잔액은 예납금을 산정할 때 고려한다.

4.3 반대청구 또는 추가 당사자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 DIS 중재평의회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와 협의 후 각 청구에 대한 개별 임시에납금 또는 예납금을 납입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4.4 DIS는 중재절차 진행 중에 임시에납금과 예납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4.5 DIS는 임시에납금과 예납금이 중재판정부에 지급되기 전까지 이를 관리한다. DIS는 중재절차의 종료 이전 예납금에 대한 모든 이자 하락의 손해를 부담하고 이자 인상의 이익을 가진다.

제5항 중재판정부의 경비

이 규칙 제34조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상황은 중재절차의 개시 당시에 시행 중인 DIS의 관련 안내지침에 따른다.

제6항 부가가치세

6.1 DIS가 중재인들에게 지급한 보수는 부가가치세 또는 중재인 보수에 적용되는 이와 유사한 세금이나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6.2 중재인들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세금이나 수수료에 대한 상환의무는 당사자들이 부담한다. 그러한 세금과 수수료의 상황은 오직 당사자들과 중재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상환절차가 용이하도록 DIS는 임시에납금과 예납금을 산정할 때 원칙적으로 보수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추가 금액을 청구하고, 추후 중재인이 당사자 혹은 다수의 당사자에게 세금 또는 수수료에 대한 청구서를 제출하여 해당 금액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한다.

6.3 DIS 관리비용에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세금이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이 부칙 2 제3항에 따른 관리비용에 추가하여 그러한 세금이나 수수료를 부담한다.

부칙 3 절차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

중재판정부는 사건관리회의에서 절차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들과 다음의 조치들을 논의한다.

- A. 당사자들의 서면, 증인진술서 및 전문가 의견서의 분량 또는 횟수의 제한
- B. 모든 증거조사를 포함한 1회의 구술심리 개최
- C. 절차의 단계적 구분
- D. 특정 쟁점에 대한 일부판정 또는 절차명령
- E. 입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한 문서제출의 요청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및 일반적으로 문서제출요청을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 F. 모든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중재의 사실적 또는 법률적 쟁점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구속력 없는 예비적 판단을 당사자들에게 제공할지 여부
- G.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당사자들 사이에 위 조치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적용 여부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사건관리회의의 또는 그 회의 직후에 재량으로 적용할 조치를 확정한다.

부칙 4 신속절차규정

제1조

중국판정은 이 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라 개최된 사건관리회의의 종료일로부터 늦어도 6개월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제2조

중재판정부는 중재의 절차를 수립함에 있어, 특히 기한을 정할 때에, 절차의 신속한 진행에 대한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이해를 항상 고려한다.

제3조

모든 당사자들은 이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이 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른 답변서에 추가하여 단 1회의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칙 제7조 제5항에 따른 반대신청의 경우 그 반대신청에 대한 답변은 추가적으로 1회의 보충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4조

중재판정부는 증거조사를 포함한 구술심리를 단 1회 실시한다. 모든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구술심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이 부칙 4의 제1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중국판정이 내려지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DIS에 서면으로 그에 대한 이유를 알려야 하며, 중국판정은 최대한 신속하게 내려야 한다. 중재판정부의 권한은 부칙 4 제1조의 기한 초과를 이유로 소멸되지 않는다.

부칙 5 기업분쟁에 대한 보충규정

제1조 적용 범위

1.1 이 기업분쟁에 대한 보충규정("DIS 기업분쟁규정")은 당사자들이 그들 사이 중재조항(회사 정관 내 혹은 그 외)에 이를 명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적용에 대해 합의한 경우 적용된다.

1.2 중재에는 이 규칙 제6조에 따른 중재절차의 개시 당시 시행 중인 이 DIS 기업분쟁규정이 적용된다.

제2조 이해관계인의 참가

2.1 모든 주주와 회사에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만 하는 분쟁에서 일반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효력을 해당 중재의 당사자로 지정되지 않은 주주 또는 회사("이해관계인")에게 확장하려는 경우, 그 이해관계인은 이 DIS 기업분쟁규정에 따라 당사자로서 또는 독일 민사소송법 제69조에 따른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보조참가인")으로서 중재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는 특정 주주 또는 회사를 상대로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만 하는 분쟁에 준용된다.

2.2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중재판정의 효력이 미쳐야 하는 주주 또는 회사의 이름과 주소를 중재신청서에 기입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지정하고, 그 중재신청서를 해당 이해관계인들에게 송달할 것을 DIS에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이 규칙 제4조 제2항에 더하여, 지정 이해관계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요구되는 충분한 부수의 중재신청서를 문서 방식 및 전자적 방식으로 DIS에 제출하여야 한다.

2.3 DIS 기업분쟁규정이 정한 이해관계인 지정 기한을 경과한 후 지정된 이해관계인은 이 DIS 기업분쟁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라 중재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제3조 중재신청서의 송부와 절차 참가 요청

3.1 DIS는 이 규칙의 제5조 제5항에 따라 피신청인과 지정 이해관계인들에게 중재신청서를 송달한다. DIS는 이해관계인에게 중재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측과 피신청인측 중 어느 쪽에 참가할 것인지 및 당사자와 보조참가인 중 어느 방식으로 참가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밝힐 것을 요청한다. DIS는 당사자들과 이 DIS 기업분쟁규정 제2조 제2항 또는 제9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절차 참가에 대해 고지한다.

3.2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가 이해관계인의 주소를 제공함으로써 지정하고 중재신청서를 해당 이해관계인에게도 중재신청서를 송달할 것을 DIS에 요청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해당 요청에 덧붙여 이 규칙 제4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부수의 중재신청서를 문서 방식 및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 지정 이해관계인에게 이 DIS 기업분쟁규정 제3조 제1항을 적용한다.

제4조 절차 참가

4.1 이해관계인이 이 DIS 기업분쟁규정 제3조 또는 제9조 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당사자로서 중재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해당 참가 의사가 DIS에 접수되는 날부터 중재의 당사자가 되어 그에 상응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보조참가인으로서 참가하는 경우에는 독일민사소송법 제69조상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권리를 가진다. 이해관계인은 참가와 동시에 추가 이해관계인을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 추가 지정 이해관계인에게 이 DIS 기업분쟁규정 제3조 제2항을 준용된다.

4.2 지정 이해관계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중재절차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그 이해관계인이 중재절차 참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는 추후 이 DIS 기업분쟁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른 중재절차로의 참가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3 지정 이해관계인은 중재판정부의 구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하에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언제든지 중재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 (i) 해당 이해관계인이 중재절차를 참가 시점의 상태 그대로 수용하거나 또는
 - (ii) 중재판정부가 재량으로 해당 이해관계인의 참가를 허락하는 경우
- 이때 이 DIS 기업분쟁규정 제4조 제1항의 제1문과 제2문이 준용된다.

제5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지속적 공지

5.1 이해관계인이 달리 서면으로 명백하게 그 참가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지정 이해관계인에게 당사자들과 보조참가인들의 모든 서면 및 중재판정부의 모든 결정과 절차명령의 사본을 이 규칙 제4조 제4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알린 주소지에 송달하는 방식으로 중재절차의 진행을 알려야 한다. 이해관계인이 추후 중재절차에 참가하는 것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는 중재판정부가 당사자 또는 보조참가인에게 보내는 다른 교신에도 적용된다. DIS가 중재판정부의 결정을 당사자들에게 송부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를 대신하여 DIS가 해당 결정을 중재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지정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송달한다.

5.2 중재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이해관계인은 사건관리회의 또는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 분쟁 대상의 확장 또는 변경, 소 취하

6.1 분쟁 대상의 확장 또는 변경 (이 규칙 제7조 제5항부터 동조 제9항에 따른 반대신청 및 이 규칙 제19조에 따른 추가 당사자의 인입 포함) 또는 주주간 결의에 대한 분쟁의 경우, 다른 결의에 대한 중재신청의 확장은 모든 이해관계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6.2 중재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 취하는 이해관계인이 해당 중재신청의 취하의사를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를 유지할 정당한 이익이 이해관계인에게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제7조 단독중재인

7.1 중재판정부가 단독중재인으로 구성되는 경우 당사자들과 보조참가인들 피신청인 및 모든 이해관계인이 중재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또는 이해관계인의 참가가 허용된 경우에는 해당 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동으로 단독중재인을 지명할 수 있다.

7.2 피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이 중재신청서를 상이한 때에 수령한 경우 중재신청서를 최후 수령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수령시점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이해관계인들이 상이한 때에 중재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최후 참가시점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7.3 당사자들과 보조참가인들이 이 DIS 기업분쟁규정 제7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이 정한 기한 내에 단독중재인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또는 보조참가인의 신청에 따라 이 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DIS 중재인선정위원회가 단독중재인을 선택 및 선정한다. 이 경우 이 규칙 제11조 제3문이 적용되며, 해당 규정의 목적에 비추어 보조참가인은 당사자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제8조 3인 중재판정부

8.1 중재판정부가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경우 이 규칙 제5조 제2항 (vii)호와 별개로 중재신청서에 중재인의 지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명이 있는 경우, 이는 단순한 제안으로 간주된다.

8.2 신청인측 당사자와 보조참가자들, 그리고 피신청인측 당사자와 보조참가자들은 중재신청서가 피신청인과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송달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또는 참가가 허용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각각 공동으로 배석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DIS 기업분쟁규정 제7조 제2항이 준용된다.

8.3 신청인측 또는 피신청인측 당사자들과 보조참가인들이 이 DIS 기업분쟁규정 제8조 제2항이 정한 기한 내에 중재인을 공동으로 지명하지 못하는 경우, 이 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DIS 중재인선정위원회가 양 배석중재인 모두를 선택 및 선정한다.

8.4 이 규칙 제12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은 중재판정부의 의장중재인의 지명과 선정에 적용되며 해당 규정의 목적에 비추어 보조참가인은 당사자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제9조 병렬적 절차의 병합

9.1 동일한 분쟁대상과 관련한 다수의 중재가 제기되어 모든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합일확정이 요구되는 경우, 이 DIS 기업분쟁규정 제9조 제2항부터 제4항이 적용된다.

9.2 시간적으로 먼저 개시된 중재("선중재")는 그 이후 개시된 중재("후중재")를 배척한다. 후중재는 허용되지 않는다.

9.3 다수의 중재신청 사이의 우선순위는 각 신청서가 DIS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DIS에 신청서가 제출된 정확한 시간의 증명을 위해 이 규칙의 제4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과는 별개로 중재신청서(이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첨부서류의 제출유무와 관계없이)는 항상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도 제출되어야 한다. 접수시각이 불분명한 경우 DIS의 재량으로 그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DIS가 이 DIS 기업분쟁규정 제9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건이라고 일응 판단하는 경우 계류 중인 중재절차의 당사자들과 지정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9.4 후중재의 신청인이 이 DIS 기업분쟁규정 제3조 제1항이 정한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는 선중재에 지정 이해관계인으로 참가할 수 있고, 이때 해당 신청서는 선중재에 대한 지정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참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해당 신청인은 이 DIS 기업분쟁규정 제3조 제1항이 정한 참가 기한 내에 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선중재의 추가 신청인이 된다. 해당 추가 신청인은 이 DIS 기업분쟁규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중재판정부의 구성에 참여할 수 있고, 이 DIS 기업분쟁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선중재에 추가 이해관계인을 지명할 수 있다. 이 DIS 기업분쟁규정 제9조 제4항의 목적에 비추어, 이 DIS 기업분쟁규정 제7조 내지 제8조가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참가는 이 DIS 기업분쟁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중재로의 참가 기한이 도과하는 날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후중재의 신청인이 이 DIS 기업분쟁규정 제3조 제1항이 정한 기한의 도과 이전에 선중재로의 참가에 명백하게 동의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를 한 시점을 기한의 기산점으로 본다. 후중재의 신청인이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 DIS 기업분쟁규정 제3조 제1항이 정한 기한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신청인은 선중재의 당사자로 고려되지 않는다. 이와 무관하게 후중재는 허용되지 않고, 이는 이 DIS 기업분쟁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0조 비밀유지의무

이 규칙 제44조는 지정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1조 중재판정 효력의 확장

11.1

당사자 또는 보조참가인으로서 중재절차에 참가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중재판정의 효력은 이 DIS 기업분쟁규정이 정한 기한 내에 이해관계인으로 지정된 이들에게 확장된다. 정해진 기한 내에 이해관계인으로 지정된 주주들은 이 DIS 기업분쟁규정에 따라 내려진 중재판정의 결과를 승인하는데 동의한다.

11.2

중재판정의 효력은 이 DIS 기업분쟁규정이 정한 기한 이후에 이해관계인으로 지정되었으나 당사자로서 또는 보조참가인으로서 중재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도 확장된다. 해당 이해관계인도 이 DIS 기업분쟁규정에 따라 내려진 중재판정의 결과를 승인하는 데 동의한다.

제12조 비용

12.1

당사자로서 또는 보조참가인으로서 중재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이해관계인은 비용 상황에 대한 권리가 없다.

12.2

이 규칙 부칙 2(요일표)에 따라 비용을 계산하는 경우, 지정 이해관계인은 당사자로 취급된다.

부칙 6 분쟁관리규정

제1조 적용범위

1.1

본 분쟁관리규정("DIS 분쟁관리규정")은

- (i) 당사자들이 DIS 분쟁관리규정에 따른 분쟁관리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또는
- (ii) 일방 당사자가 DIS 분쟁관리규정에 따른 분쟁관리절차를 신청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 적용된다.

1.2

모든 분쟁관리절차에는 이 DIS 분쟁관리규정 제2조 제4항에 따른 개시 당시 시행 중인 분쟁관리규정이 적용된다.

제2조 절차의 신청과 개시

2.1

DIS 분쟁관리규정에 따른 분쟁관리절차의 개시를 희망하는 일방 당사자는 DIS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i) 당사자들의 이름과 주소
- (ii) 신청인의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 (iii) 분쟁과 그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한 간략한 기술
- (iv) 주장하는 청구와 분쟁금액에 대한 정보

2.2

신청 당시에 이 DIS 분쟁관리규정의 분쟁관리절차에 따르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 합의를 이 DIS 분쟁관리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제 9조 제1항 (i)호 및 (ii)호에 따라 비용의 반액을 DIS에 납부한 증명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DIS는 분쟁관리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서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이 DIS 분쟁관리규정 제 9조 제1항 (i)호 및 (ii)호에 따른 비용의 나머지 반액의 납부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요청한다.

2.3

신청 당시에 이 DIS 분쟁관리규정의 분쟁관리절차에 따르기로 하는 합의가 없는 경우 또는 제2조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합의서가 없는 경우, DIS는 분쟁관리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서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그 절차에 따르기로 하는 서면 동의를 14일 이내에 DIS에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상대방 당사자가 기한 내에 동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분쟁관리절차는 개시되지 않는다. 위 동의서가 제출된 경우 DIS는 이 분쟁관리규정 제 9조 제1항 (i)호 및 (ii)호에 따른 비용의 납부를 당사자들에게 요청한다.

2.4

분쟁관리절차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일자에 개시된다.

- (i) 제2조 제2항의 경우, 분쟁관리절차 신청서가 DIS에 접수된 날
 - (ii) 제2조 제3항의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서가 DIS에 접수된 날
- DIS는 절차의 개시일을 당사자들에게 고지한다.

제3조 분쟁관리전문인의 선임

상기 제2조 제4항에 따라 분쟁관리절차가 개시되면 DIS는 당사자들과 약식의 협의를 한 후 공정하고 독립적인 분쟁관리전문인을 선임한다. DIS는 이 분쟁관리규정 제9조 제1항 (i)호 및 (ii)호에 따른 비용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분쟁관리전문인의 선임을 보류할 수 있다.

제4조 공동 협의

4.1 분쟁관리전문인은 선임된 후 지체 없이 늦어도 1주일 이내에 당사자들과 함께 공동협의 장소와 시간을 정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을 접촉하여야 한다. 분쟁관리전문인은 자유롭게 공동협의를 준비하고 당사자들에게 사전 안내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4.2 공동협의를 하는 경우, 분쟁관리전문인은 분쟁해결절차의 선택과 구성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당사자들에게 전반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공한다.

4.3 당사자들은 공동협의 중 혹은 그 직후 분쟁관리전문인의 지원을 받아 지체 없이 분쟁해결절차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당사자들과 분쟁관리전문인은 자유롭게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한다. 분쟁관리전문인은 당사자들에게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하여 제안을 할 수 있으나 결정 권한은 없다.

제5조 절차의 종료

- 5.1 분쟁관리절차는 다음의 경우에 종료된다.
- (i) 당사자들이 제4조 제3항에 따라 특정 분쟁해결절차에 합의하였음을 서면으로 표명하였을 때
 - (ii) 일방 당사자가 DIS에 서면으로 종료 통지를 접수한 때
 - (iii) 분쟁관리전문인이 DIS에 서면으로 종료 통지를 접수한 때, 특히 분쟁관리전문인이 공동 협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당사자들의 합의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
 - (iv) 당사자들이 분쟁해결절차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않고 이 분쟁관리규정 제2조 제4항에 따른 절차의 개시일로부터 2개월이 지났을 때

5.2 DIS는 제9조에 따른 비용이 DIS가 정한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분쟁관리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제6조 소멸시효

신청서에 기재된 청구에 적용되는 소멸시효는 이 분쟁관리규정 제2조 제4항에 따른 분쟁관리절차의 개시로부터 이 분쟁관리규정 제 5조에 따른 절차의 종료 후 3개월까지 정지된다.

제7조 계류중인 분쟁해결절차의 특수성

7.1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관리절차와 관련이 있는 다른 분쟁해결절차가 이미 계류 중인 경우, 당사자들과 분쟁관리전문인은 공동협의 과정에서 이미 계류 중인 해당 절차에 대한 영향도 고려하여야 한다.

7.2 계류 중인 절차가 DIS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절차인 경우 이 분쟁관리규정 제7조 제1항에 보충하여 다음이 적용된다.

- (i) 이 분쟁관리규정에 따른 DIS 관리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 (ii) 이 분쟁관리규정 제2조 제3항과는 별개로,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 표명 기한은 5일이다.
- (iii) 이 분쟁관리규정 제5조 제1항 (iv)호와는 별개로, 당사자들이 이 분쟁관리규정 제2조 제4항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분쟁관리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계류 중인 분쟁해결절차 외의 다른 분쟁해결절차에 대하여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 분쟁관리절차는 종료된다.

제8조 비밀유지의무

8.1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당사자들과 그들의 대리인, 분쟁관리전문인, DIS 임직원 및 그 외 DIS와 연계되어 분쟁관리절차에 관여하는 모든 이들은 그 절차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해당 절차의 존재, 당사자들의 이름, 청구의 성격, 증인과 전문가의 이름, 절차 결정 또는 판정 및 대중에 공개되지 아니한 증거자료는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준거법 또는 다른 법적인무로서 요구되는 범위에서는 공개될 수 있다.

8.2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도 분쟁관리절차의 본안과 관련된 절차에서 분쟁관리전문인을 증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

8.3 상대방 당사자가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도 분쟁관리절차의 본안과 관련된 소송, 중재, 또는 소송 외 분쟁해결절차에서 분쟁관리전문인을 당사자의 중재인, 전문가, 대리인 또는 고문으로 지명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선임할 수 없다.

8.4
DIS는 당사자가 그 이름으로 식별되지 않고 그로부터 특정 분쟁관리절차가 식별되지 않는 범위에서 분쟁관리절차에 대한 통계자료와 기타 일반적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8.5
이 분쟁관리규정 제8조는 당사자들의 계약상 비밀유지의무와 기밀유지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9조 비용

9.1
DIS의 관리비용 및 분쟁관리전문인의 보수와 경비를 포함한 분쟁관리절차 비용은 다음과 같다.

- (i) DIS의 관리비용은 500 유로이다.
- (ii) 분쟁관리전문인의 보수는 정액으로 2,500 유로이다. 이는 첫 공동협의를 위한 준비 및 그 진행을 포함한다. 분쟁관리전문인은 자신의 통제 범위 밖의 이유로 공동협약이 행해지지 않는 경우에도 위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 (iii) 분쟁관리전문인의 필요 경비로서 증빙이 있는 경비 특히 여행 및 숙박 비용 등은 상환된다.

9.2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DIS의 이 규칙 부칙 2의 제6항이 준용된다.

9.3
제9조 제1항에 따른 분쟁관리절차의 비용은 당사자들이 균분하여 연대하여 부담한다.

제10조 면책

분쟁관리전문인, DIS와 DIS 기관들, DIS 임직원, 그 외 DIS와 연계되어 그 절차에 관여하는 모든 이들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의무위반이 아닌 한, 그 분쟁관리절차와 관련된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DIS 윤리강령

- (1) 아래의 규정들은 DIS 중재규칙에 따른 다음의 중재절차에서 DIS 윤리강령의 투명한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
 - (i) DIS 중재인선정위원회에 의한 중재인의 선정
 - (ii) DIS 기관의 임직원이 중재인 직무 혹은 외부 대리인 직무를 수락하는 경우
- (2) 이 윤리강령은 중재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 목적에 맞게 해석되고 적용된다. DIS 기관의 모든 위원들과 DIS의 중재 행정과 관련하여 DIS 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이들은 중재의 신뢰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그들은 다음의 규정들에 구체적 내용이 없는 경우라도 이 윤리강령의 정신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며, 고도의 윤리기준을 기초로 잠정적인 이해충돌을 해결하여야 한다.
- (3) DIS 중재인선정위원회(DIS 정관 제14조)의 위원들은 다음 사항이 금지된다.
 - (i) 동시에 이사회 또는 자문위원회(DIS 정관 제7조 및 제 9조)의 일원이 되는 행위
 - (ii) 중임을 초과하여 그 직을 역임하는 행위
 - (iii) 이사회, 자문위원회, 사무국 임원들 또는 외부 감사인을 DIS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절차에서 중재인으로 선임하는 행위
 - (iv) DIS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서 중재인 직을 임기 중 수락하는 행위그러나 DIS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서 임기 중 중재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이 경우 DIS 정관 제14조 제6항에 따라 해당 중재절차와 관련된 결정 과정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 (4) DIS 사무국의 임원단 및 DIS 임직원은 다음 사항이 금지된다.
 - (i) DIS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절차에서 중재인 직을 수락하는 행위
 - (ii) DIS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절차에서 중재대리인으로 활동하는 행위
- (5) DIS 이사회의 이사진들은 독일민법 제26조(DIS 정관 제7조 제2항)에 따라 임기중 다음 사항이 금지된다.
 - (i) DIS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절차에서 중재인 직을 수락하는 행위
 - (ii) DIS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절차에서 중재대리인으로 활동하는 행위
- (6) DIS 이사회(DIS 정관 제7조)의 대리권이 없는 사외이사 및 DIS 자문위원회(DIS 정관 제9조)의 위원들은 임기중 다음 사항이 허락된다.
 - (i) 이 윤리강령 제 3 조 제 (iii)항가 정하는 제한을 고려하여 DIS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서 중재인 임무를 수락하는 행위
 - (ii) DIS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서 중재대리인으로 활동하는 행위

Deutsche Institution für Schiedsgerichtsbarkeit e.V.

German Arbitration Institute

www.disarb.org

dis@disarb.org

© 2019 Deutsche Institution für Schiedsgerichtsbarkeit e.V. – All exploitation rights are reserved worldwide.

These Arbitration Rules are drafted in a single original, of which the German and English texts are equally authoritative.

This is a non-binding translation. Translation done by Innhwa Kwon, zeiler.partners, Vienna. The DIS would like to thank the following persons for their contribution to the translation: Kyongwha Chung, Bae, Kim & Lee LLC, Seoul; Ja-Young Lee, Yuchon LLC, Seoul; SeungMin Lee, Shin & Kim, Seoul; Hyun Choung Song, Yulchon LLC, Seoul; Moritz Winkler, Yulchon LLC, Seoul.